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과장 신동호)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연차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의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위탁시설현황

- (1) 위탁시설명: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 (2) 위 치: 화성시 신동 309-1번지
- (3) 시설연면적: 187.91㎡(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다. 위탁사무

- (1)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2)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3)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4)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돌봄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계획

- (1) 위탁기간: 2023. 7. ~ 2028. 6. (계약일로부터 5년)
- (2) 수탁자의 자격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3)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 (4) 위탁운영원칙
 - (가) 토지 및 건물사용: 무상사용
 - (나) 지원예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5) 소요예산액: 103,080천원(2023년 예산반영)
 - (가) 인건비 88,680천원(7,390천원 * 12개월)
 - (나) 운영비 13,200천원(1,100천원 * 12개월)
 - (다) 프로그램비 1,200천원(100천원 * 12개월)

마. 조직 및 시설구성

- (1) 조직운영: 종사자 3명 (센터장 1인, 전일제 돌봄교사 1인, 반일제 돌봄교사 1인)
- (2) 시설구성: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탕비실, 상담실, 조리공간

바. 향후 추진계획

- (1) 2023. 5. 수탁기관 공개모집
- (2) 2023. 6.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3) 2023. 7.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개소 준비
- (4) 2023. 8. 이용자 모집 및 센터 개소 운영

사. 관계법령 : 붙임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파악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과장 신동호)

가. 제안이유

- 화성시 합계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다자녀 출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지원 관련 조항 일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정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다자녀가정 용어 개정(안 제2조제5호)

나.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근거 규정 일괄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기존의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맞추어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 본 개정으로 인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저출생 추세의 가속화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송선영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관내 헌혈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헌혈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취지가 있음.
이를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 나아가 개정의 기회에 일부 부정확한 용어를 고치고 전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도 하였음.

나. 주요내용

- 지역화폐 지급 근거 등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장려 조례 중 각종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헌혈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만을 지급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같은 상당의 상품 또는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 긴급한 의료상황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혈액을 비축함에 있어, 시민들의 헌혈 활동에 대한 현물적 보상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한층 현실적인 소득적 보상을 가능케 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헌혈장려책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4. 6. 송선영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4. 2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 시설과 설치 권장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생명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개정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규정 정비(안 제4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업무 등 위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기존 조례의 낡은 조항들을 현행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시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